

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
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함

2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
안

3. 검토의견

본 조례 폐지조례 건은

- 공영개발부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각 가능한 잡종지 등이 2007년 7월 27일 부로 매각 완료됨에 따라
-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

위 조례 폐지조례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

2008. 6. 19

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